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108282 손해배상(기)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¹⁾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7,581,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20.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22. 12. 21. 제출한 참고자료(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원고의 대표자에 관한 표시정정신청으로 선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등을 담당하는 공법인이고, 피고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B 등의 면허 및 명의를 이용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 및 운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약국에서 이루어진 의약품의 조제·판매 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었고, 원고는 2010. 5. 20.부터 2013. 5. 16.까지 사이에 위 조제·판매 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3,587,581,990원(세금 제외)을 피고가 관리하는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84 사건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가 약사인 B 등과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고, 이 사건 약국이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6,792,672,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약사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위 1심 법원은 2021. 8. 25. 피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판결²⁾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21노1631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22. 3. 3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대법원 2022도4108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 6. 3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사건(이하 '관련

2) 위 1심판결 중 2010. 5. 20.부터 2013. 5. 16.까지 기간 동안에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편취에 관한 범죄사실 부분은 위 판결서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55 내지 314 부분이다(갑 제5호증의 2 판결서 4~5, 55~57면).



형사사건'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에 있고,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약사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등 참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위와 같이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 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복약지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 참조).

3)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약제·치료재료의 지급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등 참조).

4)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참조).

나. 판단

기초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약사가 아닌 피고는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서 약사인 B 등을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고 약국 영업에 따



라 발생하는 이익을 직접 챙기는 등 이 사건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고(의 약품을 조제·판매한 바 없고 단순히 의약품 공급만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약국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2010. 5. 20.부터 2013. 5. 16.까지 B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에 원고로 하여금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 합계 3,587,581,990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서 위 요양급여비용 3,587,581,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3.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 미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의 개설·운영이 없었더라도 환자들이 동일한 처방전에 기하여 다른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였을 것이기에 어차피 요양급여비용이 지출되었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할 때에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18979(본소), 2014다218986(반소)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피고의 불법행위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후 원고로 하여금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의 지출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의 위반행위는 크게 ①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한 행위, ②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판매한 행위, ③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구체적인 행위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③), 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의무 없는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약국의 개설행위나 이 사건 약국에서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와는 독립된 별개의 행위에 해당한다. 즉, 피고가 약국개설행위와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하였더라도, 만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반대로 피고가 약국개설행위와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요양급여비



용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행위를 한 이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원고의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들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환자들이 동일한 처방전에 기하여 다른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나아가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의 직접적인 손익관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가 아니라 해당 환자와 피고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살피본 법리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타징수금 3,587,581,990원을 부과한 후 또다시 이 사건 소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기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가 아닌 피고가 약사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후 B 명의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 하여금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원인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을 뿐이다.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2호는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해당 약국



의 실질적 개설자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방식으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일 뿐, 그 시행일 전에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이 지출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개설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후 의약품의 조제·판매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원고로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신혜영
	판사	이민정
	판사	박경환